# КРРА

#### FMD,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막아내자

대 한 한 돈 협 회



137-87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1-19 제2축산회관 3층 / ☎(02)581-9751 ~ 4, 8 / Fax581-9768 ~ 9 담당:농가지원부

문서번호 한돈협지 310-13호

시행일자 2022. 6. 22.

수 신 임원 및 지부(회)장

참 조

선			지	
선 결			시	
접수	일자 시간			
	시간		결	
	번호			
처리과 담당자		- 공		
담당자			- 람	

### 제 목 축산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관련 주요 사항 안내

- 1.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지부(회)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- 2. 윤준병의원의 축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고 본회는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불합리한 조문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.
- 3. 이에, 붙임과 같이 축산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추진 경과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지부(회)에서는 회원농가에게 해당사항을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축산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관련 주요 경과 및 사항. 끝.

사 단 법 인 대 한 한 돈



# 축산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관련 주요 경과 및 시항

- 2022. 06, 대한한돈협회 -

### □ 진행 경과

○ 축산법 하위법령 개정(안)에는 축산냄새 관리를 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냄새저감시설 의무화 및 슬러리 피트 관리등을 포함하 고 있어 개정(안) 발표 시부터 협회에서 강하게 조문 개정 요구

## □ 축산법 시행령·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

구 분	정부 발표(안)	협회요구 사항	최종 개정(안)	
시 행 령	양돈장 신·증축시에 사 육시설 밀폐 의무화	축산법 시행규칙 27조의 2의 제2호에 따른 변경 허가 시에만 적용	<u>신·중축시에 사육시설</u> <u>밀폐 의무화</u> (증축시 증축 면적에 대해서만 해당)	
	가설건축물(인큐베이터, 가금 비닐하우스 축사 등) 사육금지	가설건축물 중 가축양육 실(인큐베이터 등) 법 적 용 제외요구	해당 조항 삭제	
	악취저감 설비 의무화 (1년 이내 기존 농가도 적용)	악취저감 설비 의무화 신규 허가시에만 적용	악취저감 설비 의무화 (1년 이내 기존 농가도 적용) - 악취저감설비 음수용시설 추가	
시 행 규 칙	슬러리 피트 상시 80%이내 관리,슬러리 피트 비우기 의무화 (연 1회 이상)	관리 의무 삭제	슬러리 피트 상시 80%이내 관리(액비순환시스템 설치시 적용 제외),슬러리 피트 비 우기 의무화 (연 1회 이상)	
	슬러리 피트 관리 기록의무		<u>슬러리 피트 관리 기록 의무</u> <u>삭제</u>	